
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56 조제 2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2 조, 제 22 조의 2 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주소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.

2017. 3. 22.

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인 천 북 부 지 청 장



1. 건 명 :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통지서
2. 근 거 :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, 제22조의2 및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17. 3. 22. ~ 2017. 4. 5. (14일간)
5. 의견제출안내 : 공고대상자는 인천북부고용센터직업능력개발팀(3층)에 직접방문 또는 팩스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6. 기타사항은 인천북부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김유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Tel :032-540-5616, FAX:0505-130-0030)